

부동산 분양계약 관련 인지세 납부 안내

※ 분양계약 체결 시 사전에 전자수입 인지를 발급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.

부동산분양계약서와 분양권전매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계약을 할 때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구입·첨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본세의 최대 300% 상당액이 가산세로 부과됩니다. 관련 내용과 납부 방법 등은 아래와 같습니다.

□ 인지세 납부기한 및 방법 * (관련법령) 인지세법 제1조, 제3조 제1항 제1호 및 제8조

- ☞ 과세대상 : 부동산 분양계약서와 분양권 전매계약서
- ☞ 납부기한·방법 : [분양계약] 계약체결일 / [전매] 명의병경 승인일
계약서를 작성할 때마다 전자수입인지를 구매하여 납부


□ 전자수입인지 구입처

- ☞ 수입인지 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및 우체국·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여 계약서에 첨부

□ 가산세 개정사항(21.1.1. 부터 적용) * (관련법령) 국세기본법 제47조의 4 제9항

- ☞ 납부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100%
- ☞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200%
- ☞ 6개월 초과 : 무(과소)납부 세액의 300%

I 인지세(전자수입인지) 구매방법 안내

<p>오프라인 이용방법 ※ 현금 수납만 가능 (신용카드 결제 불가)</p>	<p>① 우체국·은행방문 (방문 전문의 요망) ② 전자수입인지구매 신청서 작성 ③ 전자수입인지발급 ④ 사업주체사본 제출必 ⑤ 원본은 계약자가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</p>
<p>온라인 이용방법 ※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만 가능 (본인 명의만 가능)</p>	<p>① 전자수입인지사이트(www.e-revenuestamp.or.kr) 또는 인터넷 검색창 “전자수입인지” 검색</p> <div style="display: flex; justify-content: space-around;"> <div data-bbox="392 1326 735 1688"> <p>②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선택</p>  </div> <div data-bbox="849 1326 1263 1688"> <p>③ 비회원 또는 회원 로그인 후 구매</p>  </div> </div> <p>④ 구매 : 납부정보 입력 용도 : 인지세 납부 과세문서 종류 : 부동산 등 소유권 이전 금액 : 150,000원 / 건수 : 1건 확인 후 결제</p> <p>⑤ 출력 전자수입인지는 1회에 한하여 출력되므로 반드시 프린터 상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(재발행 불가)</p> <p>⑥ 사업주체사본 제출必 ⑦ 원본은 계약자가 계약서에 첨부하여 보관</p>